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 통합 · 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 · 보완하고
- 금속화재용(D급) 소화기의 소화성능검증방법을 신설하여 ‘마그네슘’ 금속화재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음

◇ 주요내용

- 가. 일반구조(제3조 제13, 14호)
- 나. 능력단위(제4조)
- 다. 금속화재용(D급) 소화기의 소화성능요건(제4조제5항)
- 라. 금속화재용 분체소화기의 조작방법 구분(제6조제3항)
- 마. 조작의 기구(제6조 제4항)
- 바. 내식 및 방청시험(제7조 제2항 제2호, 제6항)
- 사. 소화약제
 - 1) 분말소화약제(제8조 제3항 제4호, 9호, 10호)
 - 2) 강화액소화약제(제8조 제4항 제3호, 8호)

- 3) 침윤수용액소화약제(제8조 제5항 제3호, 5호)
- 4) 포소화약제(제8조 제6항 제8호, 9호)
- 5) 금속화재용 분체소화약제(제8조제9항)
- 아. 내압시험 및 파열압시험(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2)
- 자. 결합부 및 밸브 등(제14조 제8호)
- 차. 방사성능, 기울임방사시험, 방사유량시험, 간헐방사시험 및 30일 보존시험(제19조 제3호, 19조의2, 3, 4, 5)
- 카. 충격강도 등(제20조 제1항, 제2항)
- 타. 안전장치 및 안전밸브(제22조 제5, 6, 7항 및 제24조 제2항)
- 파. 지시압력계[제28조 본문(단서 삭제 부분), 제3호 마목, 제7, 8, 9호]
- 하. 진동시험, 기밀시험, 내부용적 등 및 고온노출시험(제30조, 제31조 제2호, 제34조 제1호 및 제37조)
- 거.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표시방법 구분(제38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)
- 너. 표시(제38조제5항)
- 더. 금속화재 소화성능시험방법(별표7)